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99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27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84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1928(昭和 3)년 2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2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25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(표기하중[標記荷重] 26톤[噸·ton]의 화차[貨車]는 30톤[噸·ton])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53조(條)제2항(項) 중(中) 「22톤(噸)의 화차(貨車)는 22톤(噸) 을 「표기하중(標記荷重) 22톤(噸)의 화차(貨車)는 22톤(噸) 으로
26톤(噸)의 화차(貨車)는 26톤(噸)」 표기하중(標記荷重) 26톤(噸)의 화차(貨車)는 26톤(噸)」

개정(改正)함.

제67조(條) 중(中) 「33전(錢)」을 「30전(錢)」으로 개정(改正)함.